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

2025. 9. 대한체육회

□ 자격요건 (※ 근거: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22호)

○ **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**(국제경기연맹, 국제대학스포츠연맹,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*의 경우 15개국 이상,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)**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**

* (단체경기) 축구, 야구소프트볼, 농구, 배구, 핸드볼, 럭비, 하키, 수구, 세팍타크로, 아이스하키, 컬링(대한체육회 경기운영내규 기준)

□ 대상주택 (※ 근거: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, 제36조)

○ **국민주택,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**

□ 자격을 갖춘 우수선수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요건

○ **무주택세대구성원**

※ 요건 해설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기준)
- 주택건설지역: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
- 무주택세대구성원: **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**
- 무주택 기간: *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4항**에서 정하는 날 기준

○ **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**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)

○ **입주자저축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**

○ **기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**(별첨 참조)**에 저촉되지 않는 우수선수**

□ 신청방법

○ 신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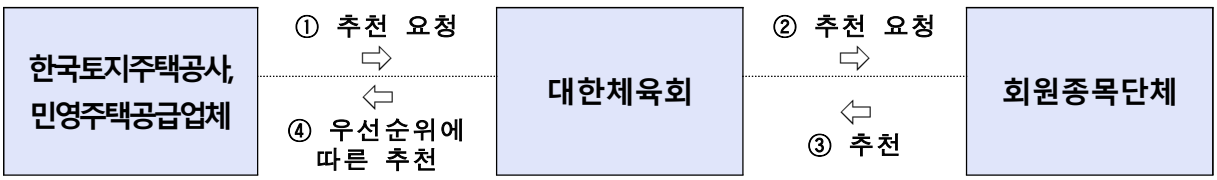

○ 우선순위 부여기준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상 대회에 대해 "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"의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를 준용한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따라 순위를 결정

구 분		점수		
		금메달	은메달	동메달
올림픽대회		90	70	40
세계선수권대회	4년 주기	45	12	7
	2~3년 주기	30	7	5
	1년 주기	20	5	2
세계대학경기대회(U대회) / 아시아경기대회(AG) / 세계군인체육대회		10	2	1

*동아시아대회, 실내아시아대회, 월드게임, 아시아선수권대회, 군인선수권대회 미인정